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8년 8월 16일
- 회 부 일 : 2018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 유출신고 대상을 “1만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
(안 제7조)
- 나.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다.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안 제11조)

라.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을 9명에서 18명 이내로 증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실질적 심의·자문 기대(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18. 4. 19.~5. 9.)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의 2), 개인정보 유출신고 대상을 “1만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안 제7조),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을 확대(9명→18명 이내)하며, 위원장(현행 행정 1부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정보기획관)로 변경(안 제11조 제3항)하여 상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 등에 있어서 시민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세부 내용 검토

1)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의 2)

- 안 제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상위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제1항1))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법정기간(3년) 보다 연장(1년)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상충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함께 기간 통일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u>② 기본계획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p>		

- 또한, 책무(제4조) 조항 다음 가지번호로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립관련 조문을 두어 정보 보호 강화에 진일보(進一歩)한 측면이 있으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작성’ 및 그에 따른 ‘연도별·기관별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등에 대한 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4조의2 제2항은 기본계획에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도 포함해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계획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적 논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이 미비하거나, 통일적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조례의 취지와 체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 하며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2)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대책(안 제7조 제3항)

- 현행은 시장이 1만 명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서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지 및 조치결과를 관련기관(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7조제3항은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²⁾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³⁾)개정(2017.10.19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시장의 신고 대상 범위를 “1만 명 이상”에서 “1천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바,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이를 1천명 이상의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정보주체의 효과적 권리 구제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신고기준을 1천 명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② (생략)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	③ ----- 1천 ----- ----- ----- ----- -----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제27조의34))에서는 정보보호 대상(신고기준)을 1명으로 하고 있는 바, 보호대상을 확대(유출 피해자 대상인원의 하향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구분	개인정보보호법(34조)	정보통신망법(27조의 3)
신고대상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고기준	1천명 이상	1명 이상
신고기한	5일 이내(지체없이)	24시간 이내
신고기관	행정안전부, KISA	방송통신위원회, KISA
유출통지	5일 이내	24시간 이내

3) 위원회의 구성(안 제11조)

- 안 제11조 제1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인적 구성을 확대(9명→18명 이내)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의사결정의 신중성·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다만, 상위법령(「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⁵⁾)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원회 정수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정하되, 표결 결과 거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홀수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임.
- 또한, 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 확대가 전문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정보기획관은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이후 1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위원회 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참석률을 제고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 위원들의 포함시키고자 확대하였다고 함.
- 안 제11조제2항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지식 및 객관적 판단과 위원회의 독립적·중립적인 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하겠음.
 - ※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안 제11조제2항제2호의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사람⁴⁾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추천하는 것인지, 본회의의 의결을 득해 추천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있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 제11조 제3항은 현행 행정1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정보기획관)로 개정하여 동 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바,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제6조의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함으로써 보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처리자 등의 개념 비교 〉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개인정보책임자 : 시·도는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마)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 18명 이 내-----.
② 위원 가운데 2명은 행정1부시장 및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 3명과 장애인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장애인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현행	개정안
<p><u>한 사람</u></p>	<p><u>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조례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u> <u>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사람</u> <u>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u> <u>4.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u> <u>5.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p>③ 위원장은 <u>행정1부시장으로</u>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 <u>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u>-----</p>

4)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 제5항)

- 안 제12조제5항은 전자적 방법(전자우편)에 의한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적 처리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전자 심의의 남용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전자적 처리방법(전자우편)은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 박탈과 함께,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대면회의의 기능을 제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후단 신설>	⑤ ----- ----- ----- ----- . 이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 또한, 정보기획관은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로 정보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할 정책과 현황을 살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참고자료) 개인정보 보호 심의 위원회 운영 실적

□ 조례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근거마련

-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심의·자문 기구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2017. 7. 31)

□ 첫번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2018. 4. 24)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6명(행정1부시장, 정보기획관, 외부위원 4명)
- 안 건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보고 및 자문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보고

-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및 과제선정 추진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 : 개인정보 보호의 날 지정 운영 등
-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강화 : 개인정보파일 정비 및 관리수준 진단 등
- 보호대책 수립 및 침해예방 활동 : 개인정보 침해대응센터 운영 활성화 등
-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 및 개인정보보호 포럼 등 정기적 개최

- 심의위원 자문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의자료 온라인 공개 : 미참석자에게 공유
- 서울시와 자치구,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
- CCTV 신규 설치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 통폐합 한다고 하니 시기 등 확인후 2019년도 PIMS 인증 추진 필요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시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전체 일괄 추진할 것